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 제안

목차

- I.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 필요성 및 개념
- II.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 설치 운영 방안
- III. 정책 제언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재가서비스로 주간보호시설 필요성 증대

- ▶ 노인인구 10명 중 1.1명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률은 2017년 8.0%에서 2022년 11.0%로 증가
 - 주간보호시설 이용대상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 낮동안 도움이 필요한 치매 및 노환 노인으로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 중 재가급여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
- ▶ 도내 주간보호시설은 701개이며, 공공이 설치한 곳은 19개소에 불과
 - 운영주체별로는 개인이 555개소(79.17%), 사회복지법인 71개소(10.13%), 주식회사 36개소(5.14%) 순이며, 협동조합 등이 포함된 기타도 17개소(2.42%)

경기도는 지역사회거주를 위한 주간보호시설 '늘봄터'를 제안

- ▶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 설치 방안
 - ① 도심내 빈집 활용하여 경기도가 직접 설치 또는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하여 폐교를 활용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설치
 - ② 31개 시군 기존 노인종합복지관과 보건소 등에 시군이 직접 설치
 - ③ 개인·법인이 운영하던 유치원, 어린이집을 노인주간보호시설로 전환 유도
 - ④ 노인거주 밀도가 높은 오래된 아파트에 주민 참여형 늘봄터 설치
- ▶ 운영 방안
 - 늘봄터 서비스 :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되며,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는 특화서비스(친환경 급식서비스, 케어팜, IT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까지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의 휴가제 보장이 가능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송영서비스 제공

정책 제언

- ▶ 늘봄터의 철학, 서비스를 공유하고 운영 매뉴얼 보급 ▶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인증제) 마련 및 협업체계 구축 ▶ 신축 공동주택에 주간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고출산 시대에는 어린이집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



I. 늘봄터 필요성 및 개념

우리사회의 돌봄 필요 인구는 급증하여 노인 10명 중 1명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인구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음

- ▶ 우리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2022년 기준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은 17.5%¹⁾, 노인인구 천만시대임
 - 우리나라의 2020년 65세 이상 인구는 815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4.9%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5년 20%, 2035년 30%, 2050년 40%를 초과할 전망
 - 인구 고령화와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으나, 노인들이 치매성 질환이나 신체적인 외상 등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매우 어려우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도화됨
- ▶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의 급증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로 연결. 노인인구 10명중 1명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 2022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927만 명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했고, 신청자는 135만 명으로 5.3%, 인정자는 102만 명으로 6.9% 증가했음
 -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의 증가폭이 더 높았으며,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17년 8.0%에서 2022년 1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즉 노인인구 10명 중 1명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표 1〉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년대비)
노인인구(65세 이상)	7,310,835	7,611,770	8,003,418	8,480,208	8,912,785	9,267,290	4.0
신청자	923,543	1,009,209	1,113,093	1,183,434	1,281,244	1,348,961	5.3
등급판정자(등급내·외)	749,809	831,512	929,003	1,007,423	1,097,462	1,160,850	5.8
인정자(등급내)	585,287	670,810	772,206	857,984	953,511	1,019,130	6.9
(판정 대비 인정률)	78.1	80.7	83.1	85.2	86.9	87.8	-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8.0	8.8	9.6	10.1	10.7	11.0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2022.12.31. 기준) 재구성

건강이 악화되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할 때, 어디에서 살면서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 ▶ 노인들이 치매 등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 기존의 자립적인 생활(independent living)에서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시설로 입소를 함
 - 불과 이삼십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집에서 계속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시설(institution)에 입소하느냐 하는 이분법적인 접근해 왔음
 - 시설입소는 케어중심으로 입소정원을 대상으로 하여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공동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관된 프로그램 제공
 - 반면, 재가서비스는 집에서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비교적 개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거주할 수 있음

1) 통계청(2022.9.29.) '2022년 고령자 통계'

I. 늘봄터 필요성 및 개념

집에 거주하면서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수요 등장

- ▶ 집에서 거주하면서 시설입소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수요가 등장하고 있음
 - 주간보호시설은 시설과 재가서비스 사이의 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 노인과 가족의 입장에서 노인이 치매가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해도 바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본인이 살던 집에서 인간적인 존엄을 지키면서 살던 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특징이 있음

주간보호시설이란 무엇이며, 누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가?

- ▶ 노인 주간보호시설²⁾은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며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
 - 노인복지법이 정한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를 의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한 형태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영어로 Day care center, adulatory center, day hospital 등으로 불리며, 현장에서는 노치원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음
- ▶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자와 제공서비스
 -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 낮동안 도움이 필요한 치매 및 노환 노인³⁾으로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³⁾ 중 재가급여(85%급여, 본인부담금 15%)에서 주간보호센터 이용⁴⁾
 - 경증치매 노인에게 필요한 신체 및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서적 안정 및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구체적인 제공 서비스는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케어, 식사지원, 건강관리, 외출동행, 치매인지재활 등이 있음

2) 우리나라의 주간보호사업은 1989년 시범사업으로 서울에 2개소가 설치되었고, 1992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3개소가 추가로 개설되었음. 또한 시범사업 이후 1993년 법적으로 규정되었으며, 국고에 의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었음. 이렇게 운영되던 주간보호사업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과 함께 보험으로 운영 재정이 변경되었으며, 그 운영주체도 사회복지법인 이 아닌 영리운영도 가능해 짐

3) 장기요양급여는 총 3가지로 ① 장기요양급여 시설 급여(80%급여, 본인부담금 20%), ② 재가급여(85%급여, 본인부담금 15%) ③ 특별현금급여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통해 서비스이용이 어려운 지역(도서지역 등)이 있음

4) 재가급여는 요양수가의 85%를 장기요양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15%만 본인부담금으로 청구됨. 단 주간보호센터 이용 시 식대 및 간식 등 기타 비급여는 별도. 주간보호센터의 이용료는 등급에 따라 다르며, 신체적으로는 양호하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되며,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5등급과 같이 본인부담금이 책정이 됨.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한달에 12번만 이용할 수 있음

I. 늘봄터 필요성 및 개념

전국적으로
주야간보호 시설은
3,035개,
23%(701개)가
경기도에 위치

우리나라 노인주간보호시설 시설 설치 및 직원 배치 기준

- ▶ (설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
 -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⁶⁾
- ▶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⁷⁾
 - (시설규모) 시설 연면적 90m²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m²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함
 - (인력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등이 필요

〈표 2〉 노인 주간보호시설 인력기준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자)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25명 이상)	1명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이상				1명	

우리나라의 주야간보호시설 현황

- ▶ 전국적으로 주야간보호 시설은 3,035개인 가운데, 경기도에 701개가 있어 전국의 23.1%가 경기도에 있음

〈표 3〉 시·도별 주·야간보호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035	457	140	126	87	115	111	66	11	701	125	126	163	178	167	231	204	27
100	15.06	4.61	4.15	2.87	3.79	3.66	2.18	0.36	23.10	4.12	4.15	5.37	5.86	5.50	7.61	6.72	0.89

자료: 보건복지부, 2023 노인복지시설현황(2022. 12.31. 기준)

5) 노인복지법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7) 노인복지법 제39조, 시행령 제29조

I. 늘봄터 필요성 및 개념

경기도 시군별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편차가 심한 가운데, 2.7%만이 공공이 설치

〈그림 1〉 시·도별 주·야간보호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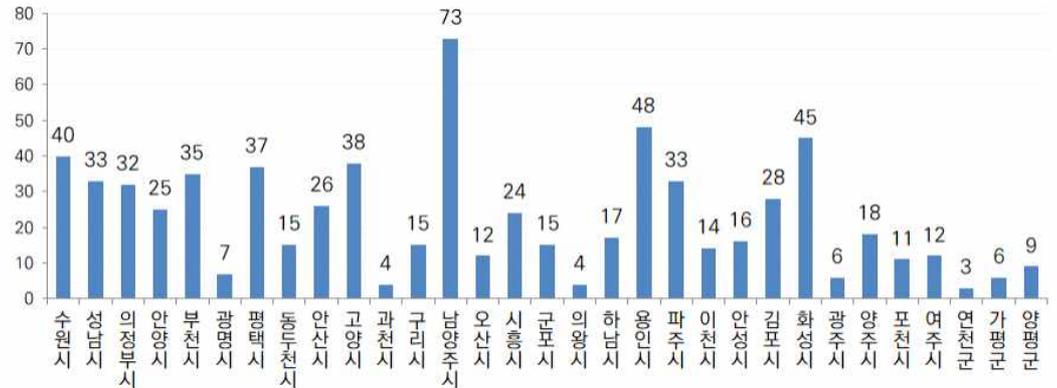


▶ 경기도내 시설은 총 701개소이며, 31개 시군별 개소수의 편차가 큼

-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연천군이 3개소로 가장 적고 남양주시가 73개소로 가장 많음

〈그림 2〉 경기도 시군 주·야간보호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경기도 주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현황

▶ 경기도내 주야간보호 시설 중 공공주체가 설치한 곳은 19곳(2.7%)이며, 모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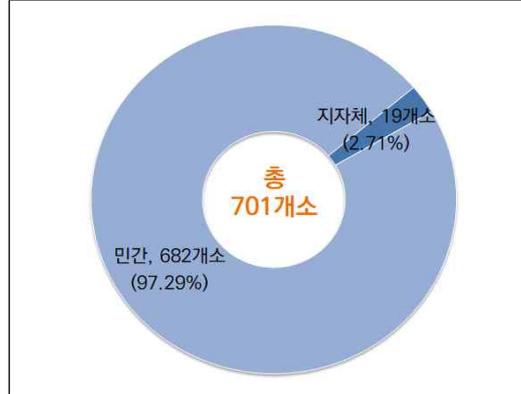
- 설치주체별로 살펴보면 지자체가 설치한 경우가 11개 시군의 19개소(모두 민간에 위탁운영 중)이며, 나머지 682개소는 민간이 설치함
 - 지자체가 설치한 지역과 시설수는 수원(2), 성남(2), 안양(1), 부천(1), 평택(2), 안산(4), 과천(2), 오산(1), 군포(1), 의왕(2), 화성(1)

I. 늘봄터 필요성 및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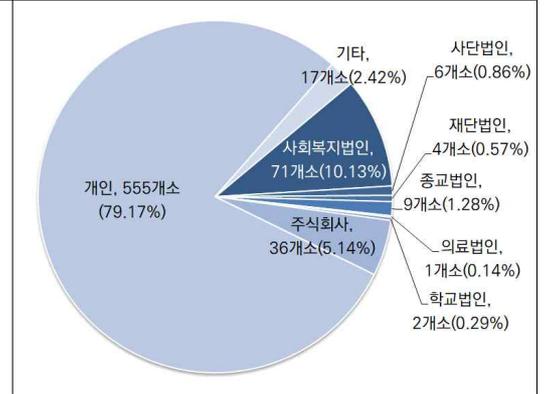
주간보호시설의 정원충족률은 70.51%인 가운데, 과천시는 정원충족률이 100%

-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555개소(79.17%)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법인 71개소(10.13%), 주식회사 36개소(5.14%) 순이며, 협동조합 등이 포함된 기타도 17개소(2.42%)임

〈그림 3〉 설치주체별 주야간보호시설 현황



〈그림 4〉 운영주체별 주야간보호시설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2023 노인복지시설현황

- ▶ 경기도내 주야간보호시설의 정원충족률은 70.51%로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31개 시군별 정원충족률은 과천시가 정원 51명을 모두 충족하여 100%로 가장 높고, 시흥시가 정원 846명에 현원 408명으로 48.23%로 가장 낮음

〈표 4〉 경기도 시군 주·야간보호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2022.12.31 주민등록인구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 (등급내) (2022.12.31.7준)	주야간보호서비스				종사자수
			시설수	이용인원		정원 충족율	
				정원	현원		
경기 합계	1,992,807	227,637	701	25,311	17,848	70.51	7,303
수원시	147,122	16,344	40	1,626	1,079	66.36	422
성남시	144,800	13,714	33	1,208	988	81.79	384
의정부시	77,555	10,128	32	1,050	811	77.24	346
안양시	84,390	8,021	25	1,095	859	78.45	331
부천시	125,752	14,434	35	1,208	859	71.11	340
광명시	45,128	4,034	7	403	316	78.41	112
평택시	73,372	8,979	37	1,126	612	54.35	249
동두천시	20,464	2,847	15	440	281	63.86	120
안산시	81,511	9,863	26	967	706	73.01	286
고양시	163,080	20,720	38	1,344	978	72.77	387
과천시	11,140	767	4	51	51	100.00	26
구리시	29,173	2,938	15	519	393	75.72	156
남양주시	115,165	14,362	73	2,523	1,779	70.51	802
오산시	25,237	3,265	12	513	371	72.32	142
시흥시	54,756	6,932	24	846	408	48.23	218
군포시	40,752	4,534	15	520	383	73.65	144
의왕시	24,954	2,353	4	149	101	67.79	45
하남시	44,618	4,031	17	744	565	75.94	218
용인시	157,226	17,091	48	1,937	1,401	72.33	555
파주시	73,543	9,192	33	1,325	856	64.60	326

I. 늘봄터 필요성 및 개념

주간보호시설의 최대 강점은 치매에 걸렸어도 살던 집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임

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2022.12.31 주민등록인구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 (등급내) (2022.12.31.기준)	주야간보호서비스				종사자수
			시설수	이용인원		정원 총족율	
				정원	현원		
이천시	34,750	3,764	14	554	443	79.96	158
안성시	36,284	4,958	16	546	342	62.64	142
김포시	66,858	6,599	28	1,173	850	72.46	335
화성시	89,334	9,625	45	1,572	1,026	65.27	406
광주시	59,448	6,190	6	179	156	87.15	64
양주시	41,886	7,270	18	552	316	57.25	168
포천시	32,863	4,392	11	340	232	68.24	106
여주시	27,269	3,285	12	358	297	82.96	121
연천군	12,319	1,373	3	61	53	86.89	28
가평군	17,841	1,894	6	195	179	91.79	86
양평군	34,217	3,738	9	187	157	83.96	80

자료: 보건복지부. 2023 노인복지시설현황(2022. 12.31.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2022. 12.31. 기준. 공공데이터 포털 추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주간보호시설은 필요한가?

▶ 주간보호시설 vs 요양시설 vs 재가서비스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간보호시설은 경증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살던 집에서 살면서 노인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최대의 장점이 있음
- 일반적으로 시설로의 입소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재가서비스는 가정안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집안에서의 고립이 야기될 수도 있음
-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간보호서비스는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사회와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으면서도 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임. 무엇보다 치매노인이 집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면서 본인의 존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 주간보호시설의 강점을 아래와 같음
 - 개인이 최대한의 독립적 생활을 하도록 돕고 요양원이나 병원 등의 입소나 입원을 예방
 - 개인의 현재 잔존기능을 유지를 돕고, 건강의 악화를 예방. 변화하는 욕구조사 및 진단
 -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고 재활을 도움
 - 지지적인 환경에서 계획된 레크레이션, 사회활동과 동료들 간의 상호 활동을 함
 - 가족부양자에게 휴식과 교육을 제공하여 가족부양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
 - 지역사회 서비스 보호의 지속성 유지

I. 늘봄터 필요성 및 개념

인구고령화로 인한 시설입소의 비용절감 및 재활강화를 위해 일본, 미국에서 주간보호시설 확충

지역사회거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주간보호시설의 국외 사례

- ▶ 일본⁸⁾에서는 지역사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재활 강화의 대안으로 활용
 - 일본은 불과 26년 만에 노인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도 2015년에 26.7%를 기록하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30%가 넘을 것으로 예측
 -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요양사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의료 의존자(개호보험 또는 의료보험 사용을 많이 하는) 역시 급격히 증가하게 되자 사회문제가 됨
 - 이에 일본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보호서비스를 활용한 재활을 강화하게 됨. 즉, 지역사회에서 장애가 있거나 고령자 및 그 가족이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복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이 의료기관에 의미없이 입원하는 것을 줄이고 자택이나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강화하게 됨
 -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유형에 맞는 컴퓨터, 노래방, 서예, 바둑 및 장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화된 교육 시스템을 개발
 - 지역 담당 주치의를 지정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 병원 공간 제공
- ▶ 미국의 데이케어센터는 주간보호시설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
 - 미국의 데이케어센터(Adult day Health care center)⁹⁾는 ① Social Day Care 간단한 프로그램, 건강 사항 포함 안 됨, ② Day Health Care 의사, 간호사 등 Nursing 측면 강조, ③ Rehabilitation Care 재활 치료 중심, 이상 3가지로 구분되어 운영
 - 미국의 데이케어센터의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는 이용자 입장에서 비용이 개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의 1/3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비용절감효과가 크다는 점임. 또한 데이케어센터의 치료와 재활까지 가능한 서비스는 노인이 최대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림 5〉 일본의 주간보호시설(재활실)



〈그림 6〉 미국의 주간보호시설



자료:(좌) <https://blog.naver.com/bluelife4916/220843551183>

(우)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5/02/13/2005021370291.html

8)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9) 미국 데이케어센터의 재정 지원은 대부분 연방 정부 및 주 정부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운영은 영리/비영리회사가 담당함. 미국에서의 돌봄은 95%가 지역사회에서 담당하고 5%만이 시설입소를 하고 있음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시립주야간보호시설의
정원충족률은
94.6%

우리는 지역사회거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 국내 노인들도 쇠약해져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싶어 하며(Aging in Place), 이러한 요구를 지원하는 주간보호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함
 - 노인이 되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쇠약(frail)해 지면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우리사회는 가족에 의한 돌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가족부양은 가족 간의 각종 갈등을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
 - 때문에 이러한 경우,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살면서 낮동안은 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유용함
 - 특히,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해져도 자신의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로 주야간보호시설을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노인의 65%가 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2%는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현 거주지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김춘남 외. 2021)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간보호시설이 다른 요양시설과 서비스에 비해 적음
 - 주야간보호시설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재가서비스 중 주간단기보호서비스의 수는 적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 노인요양시설(6,069개)보다 재가복지시설(13,217개)이 많이 공급되어 있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시설은 3,035 개로 23%에 불과(노인복지시설현황, 2023)

현재 경기도의 주야간보호시설의 정원충족률이 70%,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을 왜 논의해야 하는가?

- ▶ 주간보호시설은 적게 설치되었고, 정원충족률도 70%로 현재의 수요와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미 과잉공급된 상황임
 - 주간보호시설은 요양시설과 다른 재가서비스에 비해 적게 설치되기는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정원충족률이 70%에 불과하다는 것임
 - 주간보호시설의 정원이 충족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집 근처 시설이 있어 접근이 용이해야 하나 도심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이 어려운 점이 있음
- ▶ 하지만,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의 정원충족률은 94.6% 수준
 - 지자체 설치시설 19개소의 정원은 425명, 현원은 402명으로 정원충족률이 94.6%임
 -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의 정원충족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자체 설치 시설은 민영화된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서비스 제공방식이 영리보다는 공공성을 전제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I. 늘봄터 필요성 및 개념

늘봄터란 경기도에서
제시한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인증받은 시설

- 이는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수요로 간주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의 모델을 제안하여 민간시설을 견인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음

- ▶ 주간보호시설의 강점을 반영하여 노쇠한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델 개발 필요
- ▶ 노인들이 치매에 걸리더라도 자기 집에서 존엄한 삶(Dignity Life)을 영위할 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란?

- ▶ 늘봄터는 경기도에서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경기도에서 개발된 특화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으로 경기도형 기준을 인증받아 운영하는 곳을 의미함
 - 늘봄터의 기획 배경은 변화된 가족환경과 노인 욕구에 기반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면서 가족, 이웃과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
 - 이는 궁극적으로 치매사회를 대비하여 주간보호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치매노인들에 대한 근거리 돌봄과 치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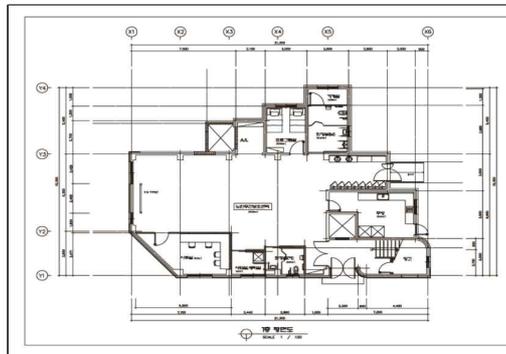
늘봄터는
유니버설디자인,
융통형디자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물리적디자인 기준
제시

지역사회거주 기회 보장,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 설치 방안

▶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 설치 기준 가이드

- 늘봄터는 경기도에서 설치 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제작하여 기존 보건복지부의 주야간보호시설 설치기준보다 시설기준을 향상시키고, 융통성 있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함
- 현재 주야간보호시설의 시설기준은 6명을 기준으로 90m²(약 27평, 6명 이상 일 경우, 1명당 6.6m²의 생활실 또는 침실 추가)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실과 물리치료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세면장, 샤워실, 세탁장은 각각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주간보호시설은 생활실이라는 큰 홀을 두고 이용자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구조를 갖고 있음
-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의 공간은 소규모 시설의 경우 매우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 매우 우수한 시설로 평가받은 곳 중에서도 공간적으로 열악한 곳이 많음. 또한, 여러 명의 노인이 같은 공간에서 하기 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음

〈그림 7〉 주야간보호시설 평면도



〈그림 8〉 주야간 보호시설 (내부 공간)



자료:(좌) <https://blog.naver.com/ponman/223036312646/> (우)경기도 노인복지과 제공

- 따라서,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는 시설 기준을 현재 물리적인 환경 기준보다 높게 제시하고, 경기도 수준에 맞는 늘봄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등을 경기도에서 지원 또는 정부의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10)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시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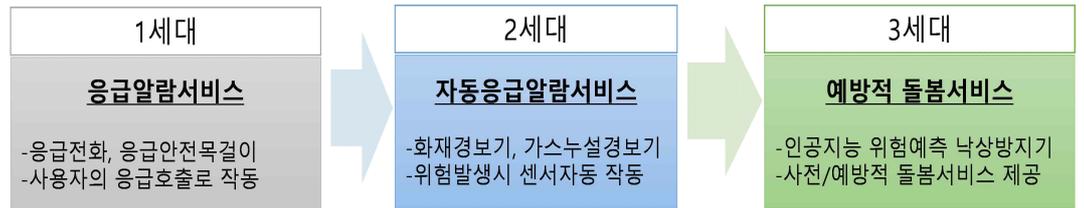
- (1) 생활실 기준면적 91제곱미터(5인)생활실이 포함되어야 함. 사무실(간호사실), 프로그램실(물리치료실), 화장실, 샤워실(세탁실), 식당 및 조리실 포함. 생활실은 입소한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면적과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함. 냉난방 및 환기 설비장치, 채광 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함
- (2) 사무실 및 의료간호사실 : 사무실 및 의료, 간호사실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 적당한 집기, 비품 및 진료, 간호에 필요한 상용 의약품, 위생재로 맞는 의료기구 갖추어야 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병행하여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16.5m² 면적 확보)
- (3) 조리실 및 식당 : 조리실 벽면과 바닥은 세정과 배수에 문제가 없는 자기질 타일과 같은 내수 재료. 채광 환기가 잘 되도록 함. 식사제공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실 두지 않아도 됨
- (4) 세면장, 샤워실, 세탁장 : 각각의 공간 기능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세정과 배수에 편리하고 안전한 구조와 내수 재료와 특히 바닥은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자기질 타일을 사용. 샤워실 최소 크기 (900 X 900)
- (5) 남녀 화장실 : 장애인 화장실 시설 기준에 맞도록 함(1,600 X 2,000)

II. 설치 운영 방안

설치 방안 ① 도심내 빈집 또는 폐교 활용

- 주생활공간은 생활실은 프로그램실, 거실, 강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공간으로 테라스 등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함
 - 치료공간은 물리치료실과 운동치료실은 생활실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주야간보호시설의 목적이 노인들의 치매진행 완화가 크기 때문에 작업치료(치매인지프로그램 포함)를 할 수 있고, 왕진 의사 등이 치료할 수 있는 진료실(마음 병원)을 둠
 - 지원공간인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이외에 이미용실 등을 추가할 수도 있음
 - 관리공간인 사무실 외에 상담실, 보호자 대기실 등 보다 융통성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또한, 생활실은 융통형 디자인으로 설계하여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노인의 욕구에 맞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환경구축 및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최근 개발된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노인의 활동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위험발생 이전에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낙상 및 다른 위험 상태가 발견되면 사물인터넷이 자동으로 돌봄제공자에게 위험수준을 알려주어 사전 예방서비스를 제공 가능¹⁾

〈그림 9〉 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알림 서비스의 발달단계



- ▶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 설치 방안 ① : 도심내 빈집 활용하여 경기도가 직접 설치 또는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하여 폐교를 활용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설치
- 구도심 주간보호시설 늘봄터 설치를 위한 빈집은 국토교통부의 도심재생사업, 빈집 지원사업, 도민환원기금 등을 활용하여 구매한 후, 주간보호시설로의 공간 리모델링은 중앙정부의 환경개선비나 경기도 노인복지기금에서 활용하여 설치
 - 빈집을 활용하여 늘봄터 설치의 경우, 경기도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의 구도심 지역 등 노인인구 비율은 높은 곳에 적절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구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노인인구비율이 높고,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농촌지역에 위치한 폐교를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음¹²⁾

11) 김정근(2021).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미국의 AI/로봇을 활용한 노인 돌봄 사례와 이슈』.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봄), 16-26.
 12)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받은 '기초지자체별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모두 82곳이다. 요양원 설립 신고를 할 때 건물의 과거 용도를 밝힐 의무가 없어 실제론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2023.7.15 트리트 그리고 울동 추며 박수 짹짹 노 인센터로 변신한 초등학교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3/07/15/QJGO4YABHJFTL16FDJR3VLF2M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II. 설치 운영 방안

설치 방안 ②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보건소에 부설시설로 설치

- 학교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무실이 ‘사무실’로, 교실이 ‘물리치료실’과 ‘생활실’로 변경해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신축보다 비용의 매우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기존의 농촌지역의 노인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졸업한 학교를 다시 주간보호센터로 이용할 수 있음

〈그림 10〉 구도심 지역 빈집 활용 예



〈그림 11〉 초등학교를 노인주간보호센터로 활용



자료: 경기도 노인복지과 제공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3/07/15/QJG04YABHJFTLI6FDJR3VLF2M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 설치 방안 ② : 31개 시군 기존 노인종합복지관과 보건소 등에 시군이 직접 설치

- 경기도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수 63개. 이중 주간보호시설은 8개소만 설치

- 노인복지관은 기존의 물리치료실, 식당 등의 인프라를 갖춘 공간이며, 전문 강사와 조직화된 전달체계를 갖고 있음. 기존의 여가프로그램 중심으로 노인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초고령사회의 치매노인의 급증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노인복지관에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음
-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경증 치매에 걸렸을 경우, 노인복지관으로 이동하여 보호자 노인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경증치매노인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등이 있을 수 있음
- 노인복지관 건물에 증축이나 기존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으로 건설비와 리모델링비 지원

- 경기도 관내 보건소 31개 시군에 43개의 보건소가 위치

- 보건소의 지역사회 간호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임. 보건소에 경증치매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한다면, 보건소의 인력과 전달체계를 활용한 전문화된 치매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
- 보건소에 늘봄터를 설치할 경우, 노인복지관의 주간보호시설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시군에 건설비와 리모델링비 지원

II. 설치 운영 방안

설치 방안 ③ 유치원, 어린이집을 노인주간보호시설로 전환

〈그림 12〉 복지관 내 주간보호시설



자료: (좌)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https://www.hssenior.or.kr/index/introduce/facilities.php>
(우) 밤밭노인복지관 https://www.bambat.org/bbs/board.php?bo_table=c_story&wr_id=15&page=5

▶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 설치 방안 ③ :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던 유치원, 어린이집을 노인주간보호시설로 전환 유도

- 현재 민간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각 광역지자체가 추진하고 있음¹³⁾. 이러한 사업을 활용하여 민간어린이집의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로 전환하는 사업설계도 가능

- 2018~2022년 5년간 경기도에서만 총 4098개 어린이집이 폐원하였는데, 연평균 820개꼴로 지난해는 882개였고 2023년 4월 기준 벌써 421개가 폐원한 상태¹⁴⁾

-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경기도형 시설의 확산을 유도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다면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주간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로 보임

- 이 경우 기존의 운영자가 직접 전환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경기도에 매매 또는 임대 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만, 경기도에서 매입이나 임대를 한다면, 기존의 공간에 대한 구입이나 임대 조건, 권리금이나 기부채납의 문제 등을 세밀하게 세워

〈그림 13〉 경기도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수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노인복지시설 현황 각년도.

공간에 대한 구입이나 임대 조건, 권리금이 사업을 설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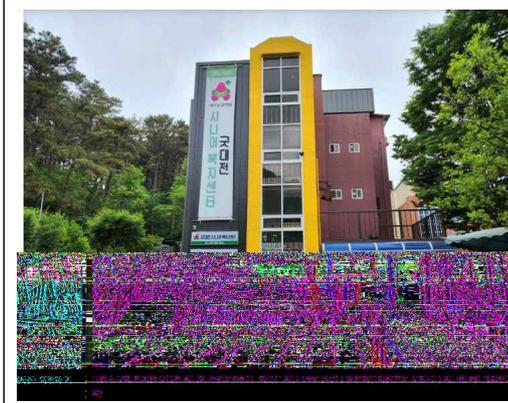
13) 경남도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사들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지 않으면서 공공보육을 강화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어린이집과 상생을 꾀하기 위해서다. 전환은 건물은 감정가로 팔고, 땅은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대신 기존 운영자는 최장 20년까지 운영권을 보장받음.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36094.html>. 경남도, 민간어린이집 사들여 국공립 전환 추진 한계레 2022.3.24.)

14) (<https://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86> 김포신문,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 원장들은 가우뚱 2023.05.30)

II. 설치 운영 방안

설치 방안 ④
노인거주 밀도가
높은 오래된 아파트에
설치

〈그림 14〉 어린이집 주야간보호시설로 전환



〈그림 15〉 어린이집의 주야간보호시설 전환



자료: (좌)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0606010001419>

(우)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31517241686296>

▶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 설치 방안 ④ : 노인거주 밀도가 높은 오래된 아파트¹⁵⁾에 주민참여형 늘봄터 설치

- 우리나라의 노후화된 주택 건물¹⁶⁾은 주택자체의 노후화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 개발도 필요함. 노후 주택에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노후화된 아파트에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시군 주택과와 협조하여 노후아파트의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수요조사 후 설치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늘봄터를 설치할 공간을 제공하고, 경기도에서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설치
- 단지 내 늘봄터를 설치하는 경우, 늘봄터의 운영철학과 운영방식을 지지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마을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단지 근처의 종교기관(교회 등)이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도 있음

지역사회거주 기회 보장,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 운영 방안

- ▶ 늘봄터 서비스의 제공 목표는 단순 나열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용노인의 요양 상태의 기능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여 제공
-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이용노인의 요인들을 기능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여, 적당하고 올바른 요양을 제공하여 노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함

15) 서울시와 은평구 등에 따르면 수색 13재정비촉진구역 내 시립 공공 노인요양시설이 이르면 오는 7월 완공된다.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인 이 건물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 중이며, 총 85명 이상의 어르신이 지낼 수 있다. 시설에는 치매 노인 보호시설도 포함된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내 요양시설은 전국서 처음이며, 치매 노인 보호시설도 함께 건립된다(은평구의 돌봄 혁신...아파트 단지 안에 노인요양시설 문 연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20708001> 한경 2023.02.07.)

16) 2023년 3월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993년 이전에 지어져 30년이 경과된 건축물은 301만7299동으로 전체(735만4340동)의 전체 건축물의 41.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30년 이상 노후 주거용 건축물 50.5% 달해 - 아시아경제, 2023.3.2.)

II. 설치 운영 방안

늘봄터의 서비스는 기존 주간보호서비스에 더하여 특화서비스 (친환경 식사서비스, 케어팜, 시기술 활용 프로그램 등) 제공

- ▶ 늘봄터 서비스 :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되며,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 시설 '늘봄터'는 특화서비스까지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늘봄터의 기본서비스는 기존 장기요양보험의 주간보호센터의 급여로 운영이 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 급여
 - 신체활동서비스 : 건강체조, 산책, 게이트 볼, 기타 운영 활동 프로그램
 - 인지활동서비스 : 웃음치료, 음악, 미술, 종이접기, 노래교실, 요리교실, 원예치료, 시장 놀이 등
 - 정서케어서비스 : 영양보호사가 노인과 말벗이 되어 일상적 정서 케어
 - 건강관리 : 혈압, 당뇨 등을 체크
 - 식사지원서비스
 - 송영서비스
 -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의 특화서비스는 별도로 경기도형으로 설치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친환경 식사 서비스 :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급여에서 제외되므로 경기도에서 친환경 로컬푸드를 활용한 식비 지원
 - 치매인지재활서비스 :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치매인지강사와 치매인지프로그램 제공
 - 케어 팜 : 근교 농장주와 MOU, 기존 농장에 있는 자원들(농작물, 원예, 동물 등)을 활용하여 주간보호센터 노인이 이용. 농촌진흥청¹⁷⁾의 케어팜 지원사업 등을 활용
 - 세대통합프로그램 : 치매노인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먹거리 만들기 활동을 인근 학교나 유치원등과 연계하여 추진
 - 시기술을 활용한 치매 돌봄, 치료 프로그램¹⁸⁾: 최근 돌봄 로봇과 다양한 시기술을 활용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 IT기업과 연계하여 시기술을 활용한 치매프로그램을 지원
 - 마을 카페 : 자립청년 등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늘봄터 입구에 카페를 설치하여 자립청년 일자리 및 마을의 사랑방으로 역할. 사회적 경제진흥원¹⁹⁾의 재정지원사업 활용
 - 마을 병원 : 앞서 일본의 경우처럼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담당 주치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채택 케어 체계를 구성하여 의사에게 환자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마을 병원 공간을 제공

17) 2021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법이 통과된 3월 25일 정부는 치유농업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은 광역시도에 및 도 농업기술원에 치유농업센터를 설치해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https://www.ekr.or.kr/Kkrpub/webzine/2022/04/subpage-105.html>

18) 복지 기술로서 VR/AR은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료적 측면과 아울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상자나 노인성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강화에 사용. 의료적 측면에서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대상자들의 공포증 극복 및 스포츠 재활을 위한 서비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 치료를 위해 VR/AR 기능이 활용되고 있음. 사회적 문제해결 측면에서는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 및 장애인 케어를 위한 방법으로 VR/AR 디바이스가 사용되고 있음

1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일자리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비를 활용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를 지원하면서 마을 카페로 소통하는 주간보호시설을 만들 수 있음

II. 설치 운영 방안

주간보호시설 근처에 마을카페 등 세대소통 프로그램 및 마을 병원 등 운영

〈표 5〉 lot기술을 활용한 인지강화 프로그램 예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코딩로봇(오조봇)	시스피커(기가 지나)
구체적인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VR카드보드조립을 통한 뇌와 손의 움직임 활성화 가상세계여행으로 다양한 간접 경험 (미리 가보는 세계여행 등) 즐거움 경험으로 인한 우울감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을 움직여 뇌위축 예방 색을 선택하고 선을 넘지 않으려는 행동이 집중력 향상 마음의 안정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봇(오조봇)을 통한 논리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길찾기 코드를 활용한 사고력 및 인지능력 향상 나의 일상 찾아가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가지니 인공지능을 통한 뇌운동서비스
디지털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드보드지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연필 마커지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조봇 오조코드 마커보드 색연필 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기가지니스피커
활동 사진				

출처 : 유병선 외(2021)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뇌활력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p.3

〈그림 16〉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예



〈그림 17〉 케어팜 운영 예



자료: (좌) <http://m.ngtv.tv/news/articleView.html?idxno=20649#0CXa>

(우)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8>

II. 설치 운영 방안

3~5등급 보호자에게 가족휴가제 보상, 송영서비스 등 가족을 배려한 서비스 제공

- ▶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배려하는 서비스 제공 : 늘봄터는 3-5등급 치매 환자 가족 휴가제 보장이 가능한 거점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 현재 우리나라 주야간보호시설은 법적으로도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주간보호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야간인력의 배치가 불명확하며(야간 시간 이용 수요가 명확하지 않음) 급여비용 보상체계 등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임
 - 경기도의 경우 주말과 야간에 별도 운영을 위한 365주간보호서비스 사업을 38개소가 실시하고 있으나, 수요 및 실효성이 떨어져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상황임. 따라서 늘봄터의 야간서비스는 정확한 수요예측 후 서비스 실시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늘봄터는 보호자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복합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재 1~2등급 환자의 보호자만 이용할 수 있는 가족휴가제를 3-5등급의 보호자에게 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가족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리적인 접근성을 고려한 송영서비스 제공
 - 연천, 가평, 양평 등 농촌지역의 경우 주간보호시설의 정원이 미충족되고 있으나,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이 없으며, 이들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송영서비스를 강화한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농촌지역 먼저 빈집 등을 활용한 주간보호시설을 경기도에서 설치하고, 송영서비스의 비용을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먼거리 노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늘봄터 운영 주체 : ① 직접 운영 ② 사회복지법인 위탁 ③ 늘봄터 설치 및 운영 기준 준수하는(인증 받은) 민간 운영시설
- ▶ 직접운영 방식 : 시범사업
 - 경기도가 직접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건설비와 운영예산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부담은 있지만,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공공형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때문에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맞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도 산하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가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고, 도민들이 수요가 나타난다면, 각 시군별로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늘봄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임
- ▶ 설치하는 시군이 하고, 운영은 민간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 현재 국공립 시설을 위탁하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복지서

II. 설치 운영 방안

늘봄터의 시범사업은
직접 설치 ·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작

비스를 제공해 왔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 현재 공급되는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의 운영방식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방식에 이에 해당됨
- 이 경우, 경기도 특화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 등은 경기도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거나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주체를 선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시군이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경우, 경기도 공공형 주간보호시설 늘봄터의 기본적인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되, 운영후원금 모금 등을 위탁법인의 재량껏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노인주간보호시설 늘봄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는(인증 받은) 민간 이 시설 운영

- 늘봄터 운영 주체는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늘봄터 운영주체는 공공, 민간을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사회적 경제주체까지 공모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창의적인 주체를 파트너로 영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이고 원활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운영주체를 모집해야 함
- 다만, 운영주체가 민간인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 재정 지원을 받으나 시설운영수익을 남기기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복지부 평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결과가 나쁘면 지정²⁰⁾ 시 패널티도 검토할 수 있음. 한편, 시설 입장에서는 경기도형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시설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 후원 등이 개인 운영시설보다 훨씬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잇점이 있음
 - 늘봄터 인증제는 경기도가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경기도가 직접 설치하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실시하면서 인증기준을 마련한 후에 실시 가능

▶ 늘봄터 시범 사업의 자원

- (설치) 도시재생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고, 리모델링비는 경기도 지원
- (운영) 운영재원은 기본적으로 보험으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서비스를 보험으로 운영하되, 특화서비스에 대하여 경기도 지원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제도를 정비하는 지정갱신제가 '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었음. 지정 갱신제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을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 이미 지정을 받아 진입한 장기요양기관도 '19.12.12일 법령시행 후 6년 후부터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

늘봄터의 철학 공유
및 매뉴얼 제작,
품질관리 및 협업체계
구축, 늘봄터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건의

경기도 공공형 노인주간보호시설 '늘봄터'의 철학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홍보 및 설치 운영 매뉴얼 제작 보급

- ▶ 늘봄터의 철학과 서비스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음
 - 늘봄터는 경증치매노인이나 거동불편 노인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걸어서 또는 차로 5분 이내에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의 보급을 목적으로 함
 - 또한, 노인에게의 접근성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더하여 노인의 존엄한 삶(dignity life)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서비스(친환경 식사서비스, 치매인지재활서비스, 케어팜, 마을 카페 등)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늘봄터의 철학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홍보 및 설치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공공형 노인주간보호시설 '늘봄터' 를 경기도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 시설 운영에 대한 꾸준한 품질관리가 필요함
 - 늘봄터 서비스 품질관리 지표 개발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위탁계약 체결시 품질관리를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인증받은 운영주체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품질관리방안에는 이용자 만족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 협력 지원 체계 지원
 - 정부와 지자체, 다양한 지역기관과 시민이 하나가 되어 유기적으로 촘촘한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서비스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

신축아파트에 주간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건의. 고출산 시대에는 어린이집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 ▶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노인주간보호시설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 건의
 -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아파트 건설시 건설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주민공동시설에 노인주간보호시설 포함 필요
 - 아파트 단지내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한다면, 과거 출산율이 높은 시기에 단지내 어린이집을 걸어서 이용하듯이 노인들이 걸어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 2항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신축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과 함께 주간보호시설도 명시